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2076221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20762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51522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회생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변론 종결 2017. 6. 15.

판결 선고 2017. 6.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51522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82,316,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대구 수성구 B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C, D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 주식회사 메이븐(이하 '메이븐'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타임건설, 메이븐과 사이에 메이븐의 공사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타임건설은 2014. 6. 25. 주식회사 한맥이앤씨(이하 '한맥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4,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타임건설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한맥이앤씨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 한맥이앤씨, 보증금액 244,444,44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한맥이앤씨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하수급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5.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

제9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양도 및 질권 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바. 타임건설은 2015. 2. 24.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 A이 채무자 타임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12. 15. 타임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사. 한맥이앤씨가 2015. 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244,444,44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한맥이앤씨가 주장하는 기성금액이 이 사건 보증서 발급 당시 타임건설이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상의 기성금 429,000,000원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한맥이앤씨와 사이에 한맥이앤씨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진행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73,362,000원을 263,362,000원으로 합의하고, 한맥이앤씨에게 2015. 5. 26. 1억 원을, 2015. 6. 19. 81,681,000원을, 2015. 10. 8. 81,68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자. 한맥이앤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한맥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9.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차.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5. 타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7. 2. 24. 타임건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7, 18,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타임건설이 당좌거래 중지로 한맥이앤씨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한맥이앤씨에게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타임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타임건설을 대신하여 한맥이앤씨에게 하도급공사 대금 263,362,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69조, 제480조에 따라 한맥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63,362,000원 중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 한도인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한맥이앤씨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2016. 9. 8. 한맥이앤씨로부터 위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한맥이앤씨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244,44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한맥이앤씨의 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타임건설 및 한맥이앤씨가 피고에게 '기성검사일 2014. 9. 30., 총 기성금액 429,000,000원, 현금 429,000,000원 수령'이라는 허위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함으로써 피고가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한맥이앤씨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한맥이앤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지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타임건설과 한맥이앤씨가 피고에게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를 기초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보증대상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924,000,000원 중 타임건설이 한맥이앤씨에게 이미 기성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429,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되는데 한맥이앤씨의 실제 공사기성은 위 429,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273,362,000원이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한맥이앤씨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맥이앤씨가 타임건설의 회생절차에서 현금변제 받은 부분 및 출자전환 받은 부분은 피고의 보증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타임건설과 한맥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맥이앤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타임건설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69조 제1항에 의한 유효한 변제를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80조에 따른 변제자의 임의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보증약관 제11조가 보증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한맥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수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변제자 임의대위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보증계약의 취소 여부 타임건설이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한맥이앤씨, 보증금액 244,444,44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보증계약 체결시 타임건설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가 있어서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타임건설과 한맥이앤씨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기성검사일 2014. 9. 30., 총 기성금액 429,000,000원, 현금 429,000,000원 수령'이라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한맥이앤씨의 기성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타임건설이 한맥이앤씨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위 기성실적증명서의 내용은 허위인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14. 5. 15.부터 2015. 5. 31.까지이고, 공사대금이 924,000,000원이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기간을 2014. 10. 1.부터, 보증금액을 244,444,44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기성실적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사기성분 및 지급된 기성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삼아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를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성실적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상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이미 하도급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 429,000,000원은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인 점, ④ 만약 피고가 위 기성실적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와 다른 조건 및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한맥이앤씨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이 원인감(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인감)과 대조하여 위 인영의 진정함을 확인하였으며, 한맥이앤씨가 추후 타임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공사 대금이 924,000,000원임에도 보증금액이 244,444,440원에 불과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맥이앤씨가 타임건설의 위 기성실적증명서 제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한맥이앤씨를 선의의 제3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타임건설은 이 사건 보증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6. 4. 15. 타임건설의 관리인에게 타임건설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로써 한맥이앤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그 취소로써 한맥이앤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기성실적증명서에 '기성검사일 2014. 9. 30., 총 기성금액 429,000,000원, 현금 429,000,000원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약관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를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보증채권자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기성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증계약은 위 기성실적증명서에서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 429,000,000원은 보증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49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한맥이앤씨가 실제 시공한 부분 중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액 244,444,44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발생시 한맥이앤씨의 총 기성액 273,362,000원은 기성실적증명서에 기재된 429,000,000원을 넘지 않고, 원고가 한맥이앤씨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위 429,000,000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맥이앤씨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한맥이앤씨가 2015. 3. 3.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을 통고하면서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미지급 기성대금 263,362,000원과 2015. 2.분 미지급 기성대금 250,000,000원을 합한 513,362,000원의 미지급 기성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② 발주자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타임건설에게 2015. 2.분 기성대금 600,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미지급 공사대금 중에는 수급사업자인 한맥이앤씨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성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988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타임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2015. 2. 무렵부터 타임건설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직접지급 요청을 받고, 2015. 5. 6.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한맥이앤씨에게 263,362,000원을 직접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타임건설의 하수급업체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1,489,427,38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타임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맥이앤씨에게 추가로 263,362,000원에 이르는 고액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가 한맥이앤씨에게 지급한 263,362,000원은 발주자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타임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인 한맥이앤씨의 시공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한맥이앤씨에 대한 263,362,000원의 지급행위를 제3자의 채무변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민법 제480조에 따른 변제자의 임의대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채권양수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은 타임건설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 통보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맥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맥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한맥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관 제11조에서 보증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보증약관(갑 제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원고가 한맥이앤씨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채권양수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하게 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해 실효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282,316,586원(= 판결 원금 244,444,440원 + 지연손해금 37,872,14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82,316,58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6. 11. 7.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백승엽

판사정준화